

## **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**



## 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 시행령
<p>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</p> <p>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
<p>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</p>	
<p>제149조(예산의 이송·고시등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 시행령
<p><b>제150조(결산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82조(결산 승인)</b> ①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.</p>
<p><b>제151조(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)</b>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,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<b>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</b>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<b>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</b>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결산 개요</li> <li>2. 세입·세출의 결산</li> <li>3. 재무제표</li> <li>4. 성과보고서</li> <li>5. 결산서의 첨부서류</li> <li>6. 금고의 결산</li> </ol> <p>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</p> <p>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</p>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 시행령
	<p>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</p>



## 지방재정법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<b>제38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)</b></p> <p>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,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</p>	
<p><b>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</b></p> <p>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정운용상황개요서</li> <li>2. 세입·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</li> <li>3.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</li> <li>4.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</li> <li>5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(추정액 기준)</li> <li>6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(예산액 기준)</li> <li>7. 성인지 예산서</li> <li>8. 성과계획서</li> <li>9.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</li> </ol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10. 명시이월 명세서</p> <p>11. 중기지방재정계획서</p> <p>12. 공유재산 관련 서류</p> <p>13.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</p> <p>1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</p> <p>2. 통합부채[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·출연기관(이하 “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”이라 한다)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. 이하 같다]</p> <p>3. 우발부채(보증·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4.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</p> <p>5.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</p> <p>6. 지방교부세 감액사항</p> <p>7.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</p> <p>8. 지방세지출현황</p> <p>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5조(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)</b>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(이하 “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</li> <li>2.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</li> </ol> <p>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9조(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)</b>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(이하 “지역통합재정통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</p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및 기금</li> <li>2.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</li> <li>3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</li> </ol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, 기준,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</p>	
<p><b>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</li> <li>2. 재무제표</li> <li>3. 채권관리 현황</li> <li>4. 기금운용 현황</li> <li>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</li> <li>6.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li>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</li> <li>8. 중기지방재정계획</li> </ol>	<p><b>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공통공시”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특수공시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</li> <li>2.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</li> <li>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</li> <li>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</li> </ol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9.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</p> <p>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</p> <p>10의2.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</p> <p>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개요서</p> <p>12.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</p> <p>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</p> <p>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</p> <p>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</p> <p>가. 교부현황</p> <p>나. 성과평가 결과</p> <p>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</p> <p>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</p> <p>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”는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로 본다.</p>	<p>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p> <p>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삭제</p> <p>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</p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<b>제60조의2(통합공시)</b>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,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.</p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제87조의3(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 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</li> <li>2.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</li> <li>3.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</li> <li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,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



## 지방회계법

지방회계법	지방회계법 시행령
<p>제18조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<u>동등하게</u>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“성인지 결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(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)</p> <p>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(이하 “성인지 결산서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성인지 결산의 개요</li><li>2.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</li><li>3.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</li><li>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li></ol> <p>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.</p>